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8월 3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9월 10일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

나.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위탁의 경쟁 제한 규제 완화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목적(안 제1조)
- 복지관 사업기능, 운영 규정(안 제3조~제4조)
- 수탁자의 의무, 시설변경 금지 등 규정(안 제8조~제9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 기 타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위탁의 경쟁제한 규제 완화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는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복지관의 사업기능, 운영 규정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시설 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1995. 1월 제정되고 2002. 01월 개정되어 14년 동안 복지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현재 관련 규정이 복지관 운영에 맞지 않아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